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연구개발센터의 평가기간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전환하고,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표5 별첨

2) 입법예고(2020.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행정서기 “8”을 “7”로 하고, 행정서기 7(종전의 행정서기 8) 다음에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을 신설하며,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7”을 “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표의 평가기간란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3]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	8	<u>7</u>	-1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u><신 설></u>	<u>1</u>	+1
•	•	•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 보	7	<u>8</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4	<u>3</u>	-1
•	•	•	

[별표 5]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관련)

1. 인사혁신처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	9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재해보상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0년 9월 30일까지
4)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	7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0년 9월 30일까지
5)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	1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2020년 9월 30일까지
6)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5명 (3급 또는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2022년 3월 31일까지
7)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2명)	2022년 3월 31일까지

2.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연구개발센터	3명 (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 명, 6급 1명)	<u>2021년 6월 30일까지</u>